

訥齋 梁誠之와 圖書에 關한 啓狀

朴 熙 永

梁誠之는 南原사람으로 李朝 太宗 14年(1414)에 낳아서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을 거쳐 成宗 13年(1482)에 別世하였다.

字는 純夫라 하고 號는 訥齋라고 하였으며 文襄이라고 謂한다.

誠之는 世宗 23年(1441)에 進士生員이 되고 다시 文科에 第二及第하여 廣昌府丞을 반았다가 成均主簿가 되더니 世宗 24年(1442) 集賢殿副修撰을 거쳐 直提學에 올랐다. 集賢殿을 辭하고 世子左輔德이 되었다가 世祖 5年(1460) 同知中樞院事로 올랐으며 世祖 8年(1463) 弘文館提學이 되었고 世祖 9年(1464) 求賢試에 及第하여 吏曹判書가 되었다. 이어서 司憲府大司憲으로 올랐다가 世祖 11年(1469) 拔英試에 及第하였고 睿宗元年(1469) 工曹判書가 되었다. 純誠明亮佐理功臣의 號를 받고 南原君에 封하게 되었다. 成宗 8年(1477) 다시 大司憲이 되더니 工曹判書로 다시 되었고 成宗12年(1481) 知中樞府事가 되었다.

誠之의 著書로는 奏議 10卷, 字集 6卷, 海東姓氏錄, 東國圖經, 農叢書, 畜牧書, 論善書, 八道地理誌, 沿邊防戍圖, 皇極治平圖, 八道圖, 兩界防戍圖, 高麗史地理誌等의 編著書가 있으며, 誠之의 孫子 梁大樹가 錦山郡守로 있을 때 編刊한 訥齋集이 있다.

以上은 誠之의 大略의 官職略歷인데 誠

之가 生存하였던 太宗 14년부터 成宗13년까지의 約七十年間 이야말로 우리나라 歷史全體面에서 그림하려니와 文化史上에 있어서도 特記할 많은 일이 이루어졌던 때이다. 그當時의 人物로는 卞季良, 徐居正, 鄭麟趾, 申叔舟, 蔡思慎, 魚孝瞻, 崔恒, 姜希顏, 金宗瑞等等의 儒出한 人物들이當時의 歷史를 이루었으며 같이 生存하였다 것이다. 文化面에서 圖書와 關係되는 몇 가지를 들이 본다면 우선 造紙所를 設置하여 종이를 大量生產하여서 많은 數의 文獻을 刊印케 하는 土臺를 堅固히 하였으며 한편 이미 便用되고 있던 鑄字를 改鑄하고 印刷法을 改良하는 등이 同時代의 일이었으며 그럼으로해서 많은 圖書가 生產되었다 例를 들면 國朝寶鑑,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三國史節要, 改撰經國大典, 續錄, 國朝五禮儀, 大學衍義輯略, 五倫錄, 東國通鑑等等이, 刊行되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가 世界에 자랑하고 있는

한글이 制定되어 訓民正音이 頒布되면서 世宗 28年(1446) 誠之도 또한 集賢殿에서 이 僉大贊事業에 參與하였으며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釋詳節, 老乞大, 朴道事, 金剛經諺解, 楞嚴經諺解 等이 印刊되기도 역시 誠之 生存時의 일이며 海印寺의 大藏經이 五十件印刷된것도 그當時의 일이었다.

增補文獻備考 卷二百四十二 藝文考一에

보면 『世祖八年初 集賢殿之罷也其所藏書籍移質於藝文館至是 上憲世宗朝辛勤裒聚之書籍 散亂帙命梁誠之彙分類別整束藏弆』

集賢殿에 있던 書籍을 藝文館으로 옮기면서 誠之가 命을 받아 이를 分類整理하였다고 하는데 얼마가 되는 藏書인지 量은 알수 없으나 質을 생각해 본다면 世宗으로 하여금 善政을 베풀게 하고 또 많은 發明과創造를 하게 한 資料였던 것이어서 世祖自身이 世宗이 에서서 봉은것의 散亂帙을 念慮하였다 그것이므로 量으로도勿論 多量이었겠으며 質로도 좋은 書籍들이 있음에 틀림없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러나 誠之가 어떠한 形態의 分類를 하였고 또 作成된 書目이 어떠한 것인지 甚히 궁금하다 萬一 整理하여 이루어진 書目이 있다면 이는 書誌學的으로도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

王朝實錄 世祖八年一月二十八日條에 보면

『初於藝文館聚文臣及成衆官等以行上護軍梁誠之爲提調啓勘書籍至是命桂陽君璿往藝文館盡書令解文學宗親等考閱多有違誤』

라고 있어前述의 藝文考에 있는 것을 뒤받침하고 있다.

王朝實錄 世祖九年五月三十日條에 보면 『上問誠之曰書冊考校幾何誠之曰己畢上曰在世宗朝書籍散亂今雖整齊藏之以備考閱誠之逐歷代書籍或藏於名山或藏於秘閣所以備遺失進書其書曰竊觀而傳永久也前朝肅宗始藏經籍其圖書之文一曰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九年一曰高麗國御藏書自肅宗朝至今六百六十三年(三百六十三年の誤植)印文始作文獻可考今內藏萬卷書多其時所藏而傳之者乞今藏書後面圖書稱朝鮮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本朝九年大明天順七年以眞字書之前面圖書稱朝鮮國御藏書以篆字書之遍著諸冊昭示萬世或依

新羅及前朝盛時例別逐年號以爲標識臣又竊觀君上御筆與其漢同其昭回與奎璧同其榮爛萬世臣子所當尊閣而寶藏者也宋朝聖製例皆建閣而藏之設官以掌之太宗曰龍圖閣真宗曰天章閣仁宗曰寶文閣神宗曰顯謨閣哲宗曰徽猷閣高宗曰煥章閣孝宗曰華文閣皆置學士待制直閣等官乞今臣等勘進御製詩文奉安于麟趾堂東別室名曰奎章閣又諸書所藏內閣名曰秘書閣皆置大提學提學直閣應教等官掌上以他官帶之郎廳以藝文祿官兼差俾掌出納』

한편 諱齋集에 있는 弘文館序에 보면 實錄의 或依新羅及前朝 라고하는 或부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又諸書所藏內閣名曰弘文館置大提學直提學等官以藝文館兼差俾掌出納世祖從之命藏秘書于舊東宮之東偏小室號弘文館以藝文奉教以下帶兼博士著作正字以掌之我殿下元年命於藝文館依集賢殿置官僚凡文翰經筵記注等事一如集賢古例於是弘文秘書亦移于藝文十年又因大臣建議改稱弘文館而別置藝文館於古書筵廳止掌辭令之事』

誠之가 行僉知中樞院事로 있을 때 啓한 것인데 이것을 보아 歷代書籍을 名山에다 또는 秘閣에다 所藏하였던 事實과 또한 所謂 御藏書에 藏書記를 記錄한 形態를 알수 있으며 아울러 中國에서의 御藏書를 各時代別로 所藏한 閣名을 알수 있으니 우리나라의 모든 制度가 中國을 모방한 것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御藏書의 閣名도推察된다. 더욱이 後世 正祖時代 文運을 크게 發展시킨 原動力이 되었고 至今에 研究에 多大한貢獻을 하고 있는 有名한奎章閣은 誠之의 이 啓狀으로 말미 암아 이룩된 것이다. 한편 秘書閣과奎章閣의 圖書所藏事務를 大提學等의 높은 벼슬의 사람으로 하여금 管掌하니 하였고 出納을 藝文祿官이 掌하게 啓한 것을 볼 때

비록 당시가 王政時라고 하더라도 圖書를
重히 한것과 할것을 염불수 있다.

王朝實錄 世祖十二年十一月十七日條에
있거

『大司憲梁誠之上書祖宗實錄國萬世之史
世太祖太宗恭靖王實錄皆書四件春秋館及外
三史庫各藏一件世宗文宗兩朝實錄只書一件藏
于春秋館甚爲未備然欲書之則事功難成幸今
新鑄小字乞命典校署印出三件藏外三庫一本
國書冊數重如實錄緊關如軍案例以鐵錫鎖其
背或以綾段粧其衣非徒誨盜猝有急遠不得揩
其手然又不可不曲爲之慮也須一件重大以備
小盜之偷須一件輕便以備倉卒今兩朝實錄一件
既已重大書藏今小字印出三件除鐵錫之飾綾
段之衣而藏之則大小之變無所不可而事功亦
易以成矣且太祖太宗恭靖大王實錄亦一件小
字印出藏之一時政記不可不急也若歲月差久
則文籍散失國家大典諸臣擬議漠沒無傳誠爲
可慮乞自壬申五月至今丙戌年十一月議政府
六曹臺諫承政院文書聚于春秋館以藝文館祿
官五人兼官五人二人爲一廳各分三年而編摩
之仍令春秋館掌上考察以爲目課以成重事
一外三史庫藏書之處也皆寄置官舍甚不嚴密
非徒火災可慮且有他日外寇之慮乞遣官密視
擇人烟相隔處移之或以全州史庫移于南原之
智異山星州史庫移于善山之金鰲山忠州史庫
移于清風之月岳山並依寺刹仍給位田又令近
村民戶守之是誠藏之名山之義也一書籍之自
中國來者雖或散逸猶復可求唯本國之書苟一
失之得之無由乞東國所撰之書皆磨勘其件
數不足者或印出或傳寫或購求以成十件弘文
春秋館外三庫各藏二件右春秋館及外三史庫
文武閣內不緊書冊並皆刷出分置文成均館
典校署以革混雜難考之弊一弘文館春秋館
所藏如元史宋史等一件書冊一皆抄名以入直
忠義忠贊衛及書房色諸司吏典就弘文春秋兩
館賸寫或以本文分選于下三道令界有監掌傳
寫或於中外購求以備三件藏之一書冊板本

京中則典校署掌之外方則別無所掌旣不如某
書可印又不能檢舉而修補之甚爲不可乞令政
院下書八道如某郡某某書板凡幾張又板之刻
朽與否一一開寫仍以常楮各印一件上選其刻
朽不用者外使守令裁之解由以爲傳授使典校
署爲之考察一銕筒賸錄國家秘密文書也春
秋館有一件文武樓有二十一件自弘方館內一
件車器鑑有幾萬一姦細倫之因以爲利則東南
之害不可勝言乞以謬字書寫內外史庫各藏三
件弘文館三件稱臣堅封其漢字書寫者並皆燠
毀以爲萬世之慮一東國文籍自檀君主本朝歷
歷可考非他蕃國遼金西夏之比也而近因遷紙
之利紙匠男女或偷承政院日記成偷寺社經文
於是嚴立法制擬定徒邊或行大辟然猶未巳本
國文史公私文券將至無遺至可慮也然不立重
法終不能禁制也乞限風俗歸正其作還紙者依
棄毀制書律施行其窩主勿論晉勿問貴賤杖一百
全家徙邊以財產告者市裏買賣者民家行
用者官府行用吏典並杖一百身充水軍官員亦
杖一百永不叙用一金典校署印出書冊內出
於一時之事不必傳久者外例將十件弘文館藏
二件春秋館外三庫典校署文武樓藝文館成均
館各藏一件傳曰予知之』

以上이 誠之外 大司憲으로 있을때 上疏
한 書籍에 關한 十條이다. 이十條을 要約
하여 본다면

1. 世宗, 文宗兩朝의 實錄이 一件뿐이
므로 典校署에 命하여 新鑄小字로 쳐 三件
을 印出하여 外三庫에 藏할것.

2. 小字印出한 兩朝의 實錄三件은 鐵錫
의 飾, 綾段의 衣를 除하고 太祖, 太宗,
恭靖大王實錄도 또한 小字로 쳐 각一件을
印出하여 藏할것.

3. 壬申(文宗2年)부터 丙戌(世祖11年)
에 이르는 時政記를 만들것.

4. 外三史庫의 藏書를 火災와 外寇를
念慮하여 全州史庫를 南原의 智異山, 星

州史庫를 善山의 金鰲山, 忠州史庫를 清風의 月岳山에 옮겨서 名山에 藏하는 義를 남길것.

5. 東國所撰의 書籍을 磨勵하여 十件을 만들여서, 弘文春秋館과 外三史庫에 각각二件을 藏하게 할것.

6. 弘文, 春秋館所藏의 元史 宋史等一件暨印 書冊은 三件을 만들도록 할것.

7. 外方書冊板本은 所掌畧으로 政院으로 하여금 八道에 下書하여 書板의 張數, 刊行를 開寫하여 각一件을 印出上送케 할것.

8. 診字로서 鏡商賈錄을 書寫하여 內外史庫에 각三件 弘文館에 三件을 藏하고 漢字로 書寫한것을 文에 대응케 할것.

9. 文籍을 還紙의 利가 있다하여 承政院日記 寺社經文을 훔치는者가 있으므로 嚴禁하고 이현者를 嚴罰할것.

10. 典校署印出의 書冊中에서 오래 傳한것 十件은 弘文館二件, 春秋館, 外三庫典校署, 文武樓, 藝文館, 成均館에 각각一件을 藏할것.

여기서 우리는 誠之의 圖書에 對한 그리고 圖書의 傳承을 爲한 精神을 알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誠之의 精誠으로 말미암아 許多한 戰亂을 겪은 오늘 날에서도 王朝實錄을 비롯하여 여러 文獻을 볼수 있다는 것은 誠之의 精神이 發露되고 그것이 繼承된 德이 아닐가 생각된다. 세례에서 말한 外三庫所藏의 圖書를 火災와 外寇를 念慮하여 人煙相隔處인 名山으로 옮기자는 建議는當時의 모든 實情으로 보아 大端히 賢明한 建議였다고 본다. 나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에서 말한 것을 보면 政府에서 刊印한것과 民間에서 刊行한 圖署를 調査하여 이를 全部 所藏하고 點은 實로重要하고 또한 大端히 緊要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이루어

겠다면 當時의 國家書誌가 되는 것이다. 한편 典校署는 即 지금 美國에 있는 United State Printing Office와 같은 機構의 部署라고 하겠으니 當時政府에 이러한 機構의 部署가 있었던事實은 書籍出版에 對한 政府의 關心을 엿볼수 있으며 典校署가 있었으므로 해서 오늘날에도 豐은 文獻을 우리가 所藏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王朝實錄 成宗十三年條에 보면

『自原君梁誠之上疏曰臣以庸劣又襄幕待罪明時若將終身豈意今日特蒙聲恩超拜崇班恩賞出於望外感何弛於中心老臣寢食思惟唯有文藝小技庶幾仰補洪祚謹將管見一十二事仰應天聽伏望容鑑財幸一臣竊觀古今帝王御製皆歌詠聲情或君臣相悅之作也誠不可不重也我本朝太祖太宗世宗文宗及我世祖大王俱有製歲甲申世祖欲撰集四聲御製及親製詩文以老臣慎密不別認局命就核書館率郎官一人旁求撰次凡筆墨紙地供頓諸事皆本館辦之數月僅修撰祖宗聲製集一卷御製詩文集三卷進上嘉賞不已藏之麟趾閣緩戊子八月十四日臣致諸宰相問安在御前上命永順君縛出御製集付臣誠之曰更加搜覓無遺錄之仍謂申叔舟曰祖宗詩予將刊板予所製則多戲語鄉其刪削亦刊板以觀臣受命未幾仙駕賓天欽號罔極臣與叔舟撰世祖實錄又撰睿宗實錄臣又撰地理誌東文選東國勝覽等書未遑啓請至今十五年間先王遺教宛然如昨御製二集今在大內況令諸書俱已就諸伏望老臣喘息猶存之前俾將會撰御製集及睿宗德宗御製蓋我當今親製詩文亦就典校外署與郎官一人解文一人盤心編次庶幾畢先王之遺意以報德於殿下又使後世皆知我本朝列聲俱有製作傳於永世豈不幸哉內編錄首末詳在世祖實錄伏望特留聲慮幸甚一臣竊觀春秋館有一件高麗史或稱權草或稱紅衣草或稱全文世宗戊辰下鑄字所印出命臣監校印畢世宗聞修史不公命停頒賜秉筆史臣以

此得罪至戊寅年世祖御思政殿臣與權寧入侍
視察上旨改正本萬仍署擊致臣名至今可考古
高麗史大全也誤錯之處今則改正伏望命春秋
館搜出本萬下典校署印頒幸甚一臣竊觀弘文
館有自警編五冊趙宋宗室善璗所撰也一代君
臣嘉言善行實著于此世宗大王深加嗟賞其時
治平要覽依此撰集然治平要覽汗漫難考自警
編則簡而有要乞命印出特垂一覽幸甚一臣竊
觀東國勝覽文翰要書也山川形勝州郡沿革因
此而可知風俗美惡人才賢否亦因此而考焉至
於詩以詠物像文以記事實皆不可輕焉者也乞
命印頒斯文幸甚一臣竊惟地理亦國家圖籍也
歷代皆有之宋有九域誌大明有一統誌臣於世
宗朝撰高麗史地理誌世祖朝又受地圖地誌之
事睿宗即位申命畢撰戊子冬始撰至戊戌正月
書成以獻乞命印出藏之官府軍國幸甚一臣竊
惟書籍不可不深藏以備萬世也如三國史記東
國史略高麗全史高麗史節要高麗史全文三國
史節要本朝歷代實錄銳商勝錄八道地理誌訓
民正音東國正韻東國文鑑東文選三韓龜鑑東
國勝覽承文勝錄經國大典京外戶籍京外軍籍
諸道田籍貢案橫看諸司諸邑奴婢正案續案各
備四件外三史庫不緊雜書並皆刷出又緊圖書
籍春秋館及三史庫各藏一件永傳萬世幸甚一
臣竊惟地圖不可不藏於官府又不可散在於民
間也東國地圖高麗中葉以上有五道兩界圖國
初有李薈八道圖世宗朝有鄭陟入道圖兩界大
圖小圖世祖朝臣誠之撰進入道圖廣延茂昌成
芮三邑圖方今臣誠之撰進沿邊城子圖兩界沿
邊防戍圖濟州三邑圖安哲孫海漕運圖又有魚
有沿永安道沿邊圖李淳叔平安道沿邊圖又下
三道監司管各有圖倭僧道安日本琉球國圖
大明天下圖紙簇各一又臣所撰地理誌內八
道州郡圖八道山川圖八圖各一兩界圖遼東圖
日本大明圖右緊關者並收於官藏弘文館其餘
一皆官收藏議政府軍國幸甚一臣竊觀銳商勝
錄家秘書也世祖朝山崔海及臣妻父邊尚卿各受
一件專掌火炮之事去內辰年盤令入內慮至周

也今春秋館有一件文武樓有二十一件萬一奸
人偷竊以爲利則生民之害可勝言哉臣願今後
御覽一件外俱以諺文書寫內外史庫各藏一件
稱臣堅封軍器寺置一件提調堅封其餘漢字書
寫者並皆焚之爲萬也之慮一臣伏聞唐開元時
吐蕃求毛詩尚書唐不與之近日永安道觀察使
請高麗史以教境內之人臣意以謂高麗史備記
戰攻勝敗固不輕示於人況本道山川遠境野人
前有卓青趙輝之事後有逆施愛之變凡事不可
不預防而曲圖之也乞命還收麗史藏之史館仍
加賜四書五經各一件幸甚史臣曰唐鄧世隆表
請集太宗文章太宗曰梁武帝父子陳前主隋煬
帝皆有文集何救於亡爲人主患無德政文章何
爲遂不許誠之非不知此言之爲美而至於疏請
何也是不遇樞上之好尚而爲之言耳其獻誠甚
矣』

이것은 誠之의 別世한 그해에 上疏한
것으로서 便宜十二事라고 稱한다. 이를
要略하여 보면

1. 甲申에 修撰한 祖宗聲製集 1卷, 御製
詩文集 3卷, 睿宗, 德宗의 當世王의 親製
詩文을 編纂하고

1. 高麗史全文을 典校署 下命하니 印頒
하고

1. 自警編 5冊을 印出하고

1. 東國勝覽을 印頒하고

1. 王初年에 이루어 丸 地圖地誌를 印
出하고

1. 三國史記, 東國史略, 高麗全史, 高麗
史節要, 高麗史全文, 三國史節要, 本朝歷
代實錄, 銳商勝錄, 八道地理誌, 訓民正音
東國正韻, 東國文鑑, 東文選, 三韓龜鑑,
東國勝覽, 承文勝錄, 經國大典, 京外戶籍
京外軍籍, 諸道田籍, 貢案橫看諸司諸邑奴
婢正案, 繼案을 各四件 叶註하고, 三史庫
의 不緊雜書를 떠부려 刷出하고, 且 緊關
書籍, 春秋館과 三史庫에 各一件을 藏하고,

1. 高麗五道兩界圖, 李衡八道圖, 鄭陟八道圖, 兩界大圖小圖, 誠之八道圖, 欽延茂昌虞芮, 三邑圖, 沿邊城子圖, 兩界沿邊防戍圖, 濟州三邑圖, 安哲孫沿海遭巡圖, 魚有沿永安道沿邊圖, 李淳叔平安道沿邊圖, 下三道監司管圖, 僮俗道安日本琉球國圖, 大明天下圖, 誠之要撰地理誌內의 八道州都圖, 八道山川圖, 八道各一, 兩界圖, 遼東圖, 日本大明圖等의 地圖를 官에 반치어 弘文館에 藏하고

1. 銃筒勝錄은 兵家의 機密圖書임으로 御覽一件以外는 謂文(한글)로서 書寫하여 內外史庫, 軍器監各一件을 藏置하고 나머의 漢字로 書寫한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大略 이라한 內容의 上疏인마이 疏文으로 우리는當時 流布 使用되었던 地圖의 種類를 알수 있다. 한편 誠之의 數次에

걸친 上疏는 恒常 重要한 圖書를 甚至於 戶籍類까지도 여러 秋을 印刷하여 이것을 여러곳에 分散保管해 하여 萬一의 境遇가 發生하더라도 圖書가 繼承되도록 留意한 點을 알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例外로 생각되는것은 世祖 12年에 上疏文에도 있었지만 成宗 13年에도 上疏한 軍機密隨書라고 하는 銃筒勝錄에 對하여는 이것을 外國에 流說할 것을 念慮하여 한글로 書寫하고 漢字로 題旨을 불에 태울것을 上疏하고 있는데 世宗때 苦心하여 만든 大砲에 關한 機密을 漢字를 使用하고 있는 隣接한 日本中國에 알려지는것을 막는 方法으로 固有한 文字인 한글로 이를 書寫하여 機密을 保持할것을 建議하고 있는것은 재미 있는 한方法이라고 생각된다.

(筆者 韓國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

會員入會案內

1. 普通會員

圖書館 또는 諸書施設에 勤務하시는 분은 누구나 本協會에 普通會員으로 加入하실 수 있습니다.

會費 : 年 1,000圓 (郵票可)

2. 賛助會員

누구든지 本協會 趣旨에 賛同하시는 분은 賛助會員이 될 수 있습니다.

會費 : 年 1,000圓以上

◎ 普通會員 또는 賛助會員에게는 本協會 機關誌 「圖協月報」를 無料로 보내드립니다.

3. 特別會員

圖書館(室)에서는 該當 會費를 添付申請하시면 會員이 됩니다.

會費

A級 年 50,000圓 (綜合大學圖書館, 國立, 國會 其他 該當 圖書館)

B級 年 30,000圓 (單科大學圖書館, 軍機關圖書館, 道立, 其他該當 圖書館)

C級 年 20,000圓 (市, 道立圖書館, 初級大學圖書館, 其他該當圖書館)

D級 年 10,000圓 (都市學校圖書館 其他小圖書館)

E級 年 5,000圓 (農村學校圖書館)